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693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 박성민·구자근·최보윤

김성원 · 강민국 · 정동만

서일준 · 김은혜 · 김기현

이상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 공장용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1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장의 경우 수시로 건축행위가 있음에도 진행 중인 허가 처리가 완료된 후 신규 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허가 절차에 관한 특례가 필요 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동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감리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건축 중인 건물까지도 감리자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시로 감리업무의 범위가 확대·축소되는 등 감리자 선정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동일 공장용지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이전에 별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의 허가와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감리의 경우 별도의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장려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법률 제 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7조(건축물의 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동일 공장용지 내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이전에 별개의 동(棟)으로 건축허가(「건 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경우(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건축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 선정을 할 때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건축허가 를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 ③ 동일 공장용지에 건축허가를 1건으로 받은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 된 동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등 허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7조(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동일 공장용지에 2동 (棟)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1건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동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할수있다.

제17조(건축물의 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동일 공장용지 내에 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 인 이전에 별개의 동(棟)으로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경우(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건축법」 제16조에 도 불구하고 별도의 건축허가 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 5조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 선정을 할 때 제1항에 따라 별 도의 건축허가를 받은 바닥면 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 ③ 동일 공장용지에 건축허가 를 1건으로 받은 경우 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건축 물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